

## 戰略的 節稅 計劃\*

鄭 雲 午\*\*

〈目 次〉

- |  |  |
|--|--|
| I. 序 論                                   | IV. 戰略的 節稅 計劃으로부터 發生하는<br>非稅金 側面에서의 費用 |
| II. 戰略的 節稅 計劃의 類型                        | V. 要 約                                 |
| III. 納稅者들의 過度한 節稅 計劃을<br>統制하기 為한 稅法上의 制約 |  |

### I. 序 論

세금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에도 우리 나라의 납세자들은 아직까지 그 중요성을 널리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개인 납세자들은 자신의 세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효율적인 세금 계획에 필수적인 정보인 자신의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이 몇 %인지 조차도 모르고 있다. 또, 대부분의 개인납세자들은 자신이 직접 세금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자들의 경우처럼 연말정산 등을 통해 수동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법인납세자들도 기업활동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법인세효과를 미리 고려하는 경우가 드물며, 다만 기업활동의 열매가 과세되는 시점에 가서야 절세를 고려하게 되므로, 이미 절세의 기회를 상실한 경우가 대부분이거나, 아니면 적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려고 함에 따라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킨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략적인 절세 계획에 관한 고찰을 통해 세금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과 이로 인한 합법적인 절세 전략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데에 있다.

절세 계획의 실현이 가능한 것은 조세제도가 매우 복잡하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조세제도는 국가의 재정을 충당하려는 목적 하나만으로 운용되지는 않

\*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의 연구비 지원(2000년)에 의해 이루어졌음.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는다. 국가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의 확보수단 이외에도, 조세제도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거나 또는 바람직하지 못한 경제활동을 억제하는 수단으로서 종종 사용된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경제활동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이득(social gain)이 경제활동 주체에게 귀속하는 개인적 이득(private gain)보다 월등히 더 높은 것으로서, 예를 들면 신기술의 개발 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투자활동이나, 외화의 획득을 위한 수출활동, 각종 사회공익단체에 기부금을 제공하는 활동, 노후를 대비한 저축활동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세법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低稅率의 적용 등과 같은 과세상 혜택을 제공한다. 반대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경제활동은 개인적 이득의 추구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상속, 증여, 부동산 투기 등을 포함하며, 이러한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高稅率이 적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 같이 조세제도가 특정 경제활동을 촉진하거나 억제하기 위해 사용됨으로써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은 납세자 간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서로 다르게 되고, 동일한 납세자라 하더라도 경제활동의 종류 및 과세연도에 따라 적용세율이 상이해 진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세법 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해 절세 계획의 여지가 발생하며 절세 계획이 유효해 지는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다음 제2절은 전략적 절세 계획을 Scholes and Wolfson(1992)에 근거하여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각 유형에 대한 상세한 예제를 제시한다. 제3절은 이러한 납세자들의 절세 계획이 애초에 조세당국이 겨냥했던 의도와는 달리 과도하게 남용되는 경우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세법에 반영되어 있는 법적 제약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러한 제약은 원칙적 수준에서 납세자들의 광범위한 경제활동에 적용되는 일반적 제약과 특정한 경제활동을 겨냥하여 제정된 특수한 제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제3절에서는 원칙적 수준에서의 일반적 제약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세법상의 제약은 과도한 절세 전략의 남용에 대처해야 하는 조세 당국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제4절은 납세자의 측면에서 효율적인 절세 계획은 세금만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비용 이외에도 절세 계획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세금 측면에서의 비용도 함께 고려하여 모든 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이라는 점을 언급한다. 이러한 사실은 절세 계획을 고려하는 납세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5절은 본 연구를 요약한다.

## II. 戰略的 節稅 計劃의 類型

전략적 절세 계획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보면, 소득의 형태를 전환하는 전략, 소득의 귀속처를 전환하는 전략 및 소득의 귀속시기를 전환하는 전략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Scholes and Wolfson, 1992).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절세 전략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자.

### (1) 소득의 형태를 전환하는 전략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자본이득(capital gain)에 대해서는 여타의 소득보다 과세 상 혜택을 부여한다. 자본이득이란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자본재(capital assets)의 가격상승으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을 말하며, 여타의 소득이란 배당 및 이자와 같은 금융소득이나 급여, 상여금과 같은 근로소득 등을 말한다. 後者를 자본이득과 구분하기 위해 이하 보통소득(ordinary income)이라 부르도록 한다. 자본이득에 대해 대부분의 나라에서 조세혜택을 주는 이유는 자본재에의 투자를 촉진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일례로, 우리 나라의 경우 대표적인 자본이득인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증권거래소 상장주식 및 코스닥 등록주식의 경우 100% 비과세 한다. 또, 일가구일주택의 경우 부동산양도차익은 비과세이다. 미국의 경우도 1986년 Tax Reform Act 이전에는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한 長期자본이득(long-term capital gain)에 대해 40%만 과세하고, 60%는 비과세 하였다. 현재는 12개월 이상 18개월 이하 보유한 자산에 대한 中期자본이득(mid-term capital gain)은 최대 28%, 18개월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한 長期자본이득(long-term capital gain)은 최대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미국의 현행 최대소득세율이 39.6%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커다란 과세혜택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소득의 형태를 바꾸는 절세 계획의 대부분은 조세혜택이 없는 보통소득을 그러한 혜택이 주어지는 자본이득으로 바꾸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전략의 좋은 예로서 Scholes and Wolfson(1992)은 다음과 같은 예를 소개하고 있다. 鑄貨를 제조하는 어느 회사가 銀貨를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1년 뒤 판매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還買할 것을 보장하였다. 이 경우 은화는 자본재에 속하므로 매입자(즉, 투자자)는 환매가격과

매입가격의 차액을 자본이득으로 간주 받아 과세되므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반면, 회사는 환매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액만큼의 손실을 자본손실이 아닌 보통손실로 인정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회사가 주화제조업자이므로 은화가 자본재가 아닌 재고자산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자본손실은 자본이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하고 사업소득과 같은 보통소득에서는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은화의 환매가격과 판매가격 간의 차이를 보통손실로 인정받음으로써 회사가 자본이득이 없는 경우라도 이를 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회사측에 유리하다. 그러면 이 사례가 어떻게 소득의 형태를 전환하는 절세 전략이 되는지 살펴보자. 먼저, 위 주화제조회사가 시행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들여다보면, 이 거래는 사실상 회사가 은화의 판매가격에 해당하는 자금을 차입하고 은화 매입자들에게 환매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이와 동등한 이자를 지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은화 매입자들 편에서 보면 이 거래는 이자소득이라는 보통소득을 자본이득으로 전환시킨 절세 전략인 것이다. 한편, 은화 매입자들은 세금혜택을 받았으므로 통상적인 이자율보다 더 낮은 이자율을 주화제조회사에게 적용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회사도 더 낮아진 차입이자율로 인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위 사례를 우리 나라의 조세환경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각색해 볼 수도 있다. 첫째, 상장회사의 주식이나 코스닥등록주식을 유가증권으로 보유한 회사가 해당 주식을 개인에게 매도하고 일정 기간 후 더 높은 가격으로 환매할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개인의 경우 주식양도차익은 자본이득으로서 비과세 대상이므로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거래의 경제적 실질은 대차거래로서 실질적으로는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이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절세 전략은 보통소득을 자본이득으로 전환한 예가 된다. 또, 건설회사가 자신이 건설한 공동주택 등을 부동산임대업자(또는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매도하고 일정 기간 후 더 높은 가격으로 환매할 것을 보장해 줄 수 있다. 부동산 임대업자(또는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경우 양도소득은 비과세이므로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거래도 경제적 실질은 자금의 貸借거래이므로 이러한 절세 전략도 이자소득을 자본이득으로 전환한 예가 된다. 물론 이러한 절세 전략의 성공여부는 국세청이 환매조건부 판매를 어떻게 해석하여 과세하느냐에 궁극적으로 달려있다. 뿐만 아니라, 환매 약속의 성실한 이행과 이에 대한 신뢰도에도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환매기간이 길수록 약속이행에 대한 신뢰도는 감소하며, 절세 전략의 성공적 수행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성이 높아진다.

소득의 형태를 전환하는 절세 전략의 대부분이 보통소득을 자본이득으로 바꾸려는 시도이지만, 보통소득이라고 해도 그것이 어떻게 분류되느냐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절세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일례로, 법인의 경우 사업을 위해 조달한 자본이 부채인지 아니면 주주지분인지에 따라 자본조달비용에 대한 법인세 공제여부가 결정된다. 즉,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주주지분에 대한 배당은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법인의 稅後자본조달비용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 그러나, 법인의 입장에서는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증권을 지분증권, 즉 주식으로 분류할 것이지 또는 채권으로 분류할 것인지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경영자의 자의적인 결정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일부 회사들은 매우 높은 부채비율을 갖고 있는데, 특히 leveraged recapitalization이나 leveraged buyout(LBO) 이후에 그러한 경향이 현저해진다. 또, 많은 新生기업들, 그 중에서도 특히 closely-held 신생기업들에서 부채비율이 매우 높은 경향을 갖는다. Scholes and Wolfson(1992)에 따르면, 미국의 국세청은 이에 대처하기 위한 규제를 시도한 적이 있었다. 즉, 회사가 발행한 부채증권을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지분으로 취급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함으로써 회사가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을 남용하는 것을 억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에는 경우의 수가 너무 광범위하여 결국 실패하였다.

우리 나라의 경우 지급이자의 공제한도를 설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2000년부터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으면 초과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손금산입(공제)을 불허하고, 이 차입금 倍數는 2년마다 점차적으로 하향 조정되어 2006년에 가서는 2배로 낮추어진다. 대상법인은 상장법인, 코스닥 등록법인,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계열 법인, 그리고 금융기관 등을 포함한다. 이는 주로 최근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과다하여 기업위험이 지나치게 높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 세법개정을 통해 이루어진 조치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이자비용 손금산입 제한조치는 미국의 국세청이 시도한 규제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하겠으나, 어쨌든 법인이 조달한 자본을 자의적으로 부채나 지분으로 분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의 측면은 유사하다고 하겠다.

한편, 우리 나라의 소득세제는 미국과 달리 분류과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소득세제는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일괄적으로 과세하는 형태를 취하지 않고 소득의 성격과 발생형태에 따라 각각 별도의 과세방법을 적용한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과세상 소득의 형태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종합소득,<sup>1)</sup>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

득으로 구분하며, 각 유형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방법, 적용 세율구조 등에서 차이가 난다. 이러한 과세제도로 인해 우리 나라의 경우 소득의 형태를 전환하는 절세 전략의 여지가 미국보다 오히려 더 넓다고 볼 수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급여와 같은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속하는 소득으로서 퇴직시에만 수령하는 퇴직소득에 비해 과세상 매우 불리하다. 즉, 퇴직소득은 근로소득에 비해 엄청난 과세혜택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수령액의 상당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정상적인 퇴직의 경우에는 50%를, 명예퇴직 또는 공무원의 경우는 75%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다음의 사례는 1억원을 퇴직소득으로 수령한 경우와, 근로소득으로서 수령한 경우를 비교함으로써 퇴직소득이 근로소득에 비해 얼마나 큰 과세혜택을 누리는지를 보여 준다.

김 명퇴氏가 현 직장에서 10년 근속 후 명예퇴직을 하면서 1억원의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자. 김 명퇴씨의 경우는 명예퇴직이므로 75%의 퇴직소득공제혜택을 받게 되고, 장기근속공제로서 4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게 된다.<sup>2)</sup> 이에 더하여 소득세율 구조의 누진효과를 제거함으로써 세금을 경감하기 위해 연분연승법에 의해 납세액을 계산한다. 연분연승법에 따르면, 먼저 공제 후의 퇴직소득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후 이 금액을 기준으로 납세액을 산출하고, 이 납세액에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여 세액을 구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득세율의 누진효과가 제거되어 납부세액이 경감된다. 마지막으로, 연분연승법에 의해 계산한 세액에서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결정된다. 이때 퇴직세액공제액은 24만원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또는 연분연승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50%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김 명퇴씨의 퇴직금에 대한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할 수 있다.

$$\text{퇴직소득공제 후 금액} = 1\text{억원} \times (1 - 75\%) - 400\text{만원} = 2,100\text{만원}$$

$$\text{연분연승법의 적용: } 2,100\text{만원} \div 10\text{년 (근속연수)} = 210\text{만원}$$

$$210\text{만원} \times 10\% \text{ (적용세율)} = 21\text{만원}$$

1) 종합소득은 다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분리과세로 인한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기도 한다. 한편, 일시재산소득이란 서화, 골동품, 산업재산권(영업권, 광업권, 어업권 등)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가리키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이러한 일시재산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야 마땅하다.

2) 장기근속공제는 10년 근속자의 경우 400만원이나, 20년 근속자는 1,200만원임.

$$21\text{만원} \times 10\text{년} = 210\text{만원} \text{ (연분연승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

$$\text{퇴직세액공제} = 210\text{만원} \times 50\% = 105\text{만원}$$

$$\text{최종 납부세액} = 210\text{만원} - 105\text{만원} = 105\text{만원}$$

결과적으로, 김명퇴씨는 1억원의 퇴직소득에 대해 105만원의 세금만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면, 1억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얼마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까? 현행세제 하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한도는 연간 1,200만원이다. 따라서,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은 8,800만원(= 1억원 - 1,200만원)이 된다. 우리나라 현행 누진세율 구조는 1천만원까지 10%, 1천만원 초과 4천만원까지는 20%, 4천만원 초과 8천만원까지는 30%, 그리고 8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40%로 되어 있다. 따라서, 8,800만원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은 2,220만원에 달하게 되고, 여기서 근로소득세액공제인 60만원을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은 2,160만원이 된다. 이는 동일한 금액의 퇴직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인 105만원의 20배 가량이 되는 금액이다.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간의 이러한 과세 상의 차이는 전략적 절세 계획의 여지를 제공한다. 일례로, 퇴직을 몇 년 앞둔 사람의 경우 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금부터 퇴직직전 까지의 급여(즉, 근로소득)을 삭감하고, 그 대신 퇴직시에 그 동안 삭감된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수령한다면 엄청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는 소득의 형태를 전환하는(즉, 근로소득을 퇴직소득으로 바꾸는) 절세 전략이 된다. 물론, 퇴직금의 지급은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경우만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으므로, 이러한 절세 전략의 성공여부는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과 이에 대한 국세청의 인정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사실, 근로소득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과세되는 소득의 유형이라는 점은 우리나라 법인들의 급여 체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행 조세체계 하에서는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급여에 대해서는 과세혜택이 全無하므로,<sup>3)</sup> 급여 수준이 높은 근로소득자의 세

3) 첫 500만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소득공제가 허용되고, 500만원 초과 1,500만원까지는 40%. 1,500만원 초과시 10%의 소득공제가 주어지며, 근로소득공제한도는 전술한 대로 1,200만원이다. 따라서, 1,500만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900만원의 공제가 허용되는 셈이며, 나머지 300만원(=1,200만원 한도 - 900만원)의 공제를 소진하게 되는 추가적인 근로소득액은 3,000만원(=300만원 ÷ 10%)이 된다. 결과적으로 4,500만원(=1,500만원 + 3,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득공제혜택이 없게 된다. 한편,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는 45%, 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0%를 적용하며, 세액공제 한도는 60만원이

부담은 매우 높게 된다. 이로 인해 우리 나라 법인들은 근로소득 대신 접대비,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등의 급여성격을 갖는 비용을 임직원들에게 지급함으로써 세부담의 경감을 시도한다. 이로 인해 우리 나라 법인들의 급여체계가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고 불투명하게 되고, 이로 인해 급여가 인센티브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된다.<sup>4)</sup> 접대비, 복리후생비 등의 급여성 비용이 주로 높은 근로소득자들인 高位 임직원들에게 한정되어 지급되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급여성 비용의 지급이 전략적 절세 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쉽게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절세 계획은 소득의 유형을 바꾸는 절세 계획의 하나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최근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활성화된 스톡옵션의 경우 옵션행사이익의 일부분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므로,<sup>5)</sup> 현재의 급여를 스톡옵션과 같은 미래로 이연된 보상(deferred compensation)과 대체함으로써 절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와 같이 근래에 들어와서 다양한 형태의 보상제도들이 기업에 도입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과세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여 보상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compensation 전문가들의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2) 소득의 귀속처를 바꿈

두 번째 유형의 전략적 절세 계획은 소득의 귀속처를 바꾸는 것이다. 일례로, 高세율 납세자의 경우 免稅혜택을 누리는 연금기금(pension fund)을 통해 소득을 획득하거나, 低세율 납세자인 그들의 자녀나 또는 低세율 사업체(예: 低세율 국가나 세금천국(tax

다. 따라서, 근로소득산출세액이 175만원이 될 때 세액공제 한도 60만원이 소진된다. 그러나 4,500만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560만원으로서 175만원을 이미 초과하므로 4,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지지 않는다. 종합하면, 4,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 모두가 적용되지 않는다.

- 4) 이러한 사실은 절세 전략이 비세금 측면에서 발생시키는 비용(cost)의 한 가지 예가 된다. 이러한 비세금 비용에 관하여는 추후 제4절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 5) 현행 세법에 따르면, 옵션행사 가격을 기준으로 3천만원까지에 해당하는 옵션행사이익은 비과세되며 행사가격 3천만원을 초과하는 옵션의 행사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예를 들어, 행사가격이 3천원인 옵션 10,000개를 주가가 10만 3천원일 때 행사하였다면, 10억원( $= 10만원 \times 10,000개$ )에 해당하는 옵션행사이익 전체가 비과세된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옵션행사가격이 낮을수록 과세혜택은 커진다. 이와 같이 현행세법은 비과세 범위가 옵션행사가격에 근거하여 정해져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과도한 옵션행사이익이 비과세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과세 범위를 옵션행사이익에 근거하여 결정하도록 세법이 개정될 예정으로 있다.

haven country)에 위치한 기업 등)로 하여금 소득을 획득함으로써 절세를 달성할 수 있다. Scholes and Wolfson(1992)은 이러한 유형의 절세 계획과 관련하여 흥미 있는 미국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개인연금계정(IRA)에서 발생하는 투자이익은 과세되지 않고 재투자되며, 이러한 투자이익은 해당 개인이 연금을 인출할 때에 과세된다.<sup>6)</sup>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미국의 은행들은 시장금리보다 높은 이자율을 지급하는 IRA를 판매하면서 동시에 시장금리보다 낮은 certificate of deposit(CD)을 한 데 묶어서 판매한 적이 있었다.<sup>7)</sup> CD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보통소득으로서 완전과세가<sup>8)</sup> 이루어지므로, 미국 은행의 이러한 묶음 판매전략(tie-in arrangements)으로 투자자들은 면세가 된 주머니(pocket), 즉 개인연금계정의 이자소득은 커지고, 반면 과세되는 주머니(즉, CD)의 이자소득은 작아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해 소득의 귀속처를 완전과세 되는 곳에서 비과세 되는 곳으로 바꾸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미국 국세청은 수년이 경과한 후에야 이러한 세법의 남용을 눈치채고, 은행의 묶음 판매에 대해 종국적으로 벌과금을 부여하게 되었다.

최근 매일경제신문(2000년 5월 23일)에 소득의 귀속처를 바꾸는 절세 전략에 관한 예가 실린 적이 있다. 2001년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부활을 앞두고 이를 회피하려는 납세자들이 타익신탁을 이용하는 것이다. 타익신탁이란 은행이나 투신사의 신탁상품에 가입하면서 거기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한 수익자를 본인이 아닌 제 3자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일례로, 종합과세 대상자인 아버지가 신탁상품에 가입하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신탁이익을 저세율의 자녀에게 지급되도록 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신탁상품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수익자로 지정된 자녀에게 귀속되므로 아버지는 종합과세의 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기사에 실린 사례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박 종합氏는

6) 이외에도 미국의 연금은 투자액 전액이 소득공제 되는 과세혜택이 주어진다(물론, 투자한도는 있음). 반면 우리 나라의 개인연금은 소득공제 되는 부분이 극히 작으나(공제액 한도가 최대 72만원), 미국과는 달리 연금을 인출할 때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한편, 우리나라 조세당국은 연금에 대한 과세 방법을 미국식으로 바꿀 것을 고려 중에 있다. 그러나, Scholes and Wolfson(1992)에 따르면, 연금투자액을 소득공제 해 주고 나중에 과세하는 방법과 소득 공제를 인정해 주지 않고 그 대신 나중에 연금을 인출할 때에 비과세 하는 방법을 비교해 볼 때, 납세자의 투자수익 측면에서 이 두 가지 과세 방법이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따라서, 우리나라 조세당국이 연금에 대한 과세방법을 바꾼다고 하여도 납세자의 측면에서 볼 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7) 미국의 CD는 우리 나라의 양도성 예금증서보다는 정기예금과 더 유사하다.

8) 여기서 말하는 완전과세란 발생한 경제적 이득에 대해서 과세가 이연되지도 않으며, 비과세나 부분적인 면세도 전혀 허용되지 않음을 말한다.

예금이 7억원에 달한다. 예금 이자를 8%로 계산할 경우 원금 7억원에서 발생하는 금융 소득은 모두 5,600만원이 된다. 이에 따라 2001년부터 박씨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된다. 그러나 연간 이자소득 4,000만원까지는 15%의 세율로 분리과세 되므로 문제가 되는 것은 4,000만원을 초과하는 1,600만원이다. 이 경우 박씨는 연간 4,000만원의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원금 5억원은 본인 명의로 예금에 가입하고, 나머지 2억원은 두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한 타익신탁에 각각 1억원씩 가입하면 된다. 이러한 전략은 소득의 귀속처를 바꾸는 절세 계획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타익신탁으로 자녀에게 각각 지급되는 800만원씩의 이자소득은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성년 자녀에게는 3,000만원까지, 미성년 자녀에게는 1,500만원 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박 종합氏의 경우는 증여세 부담이 없다.<sup>9)</sup> 다만 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위장 증여한 것으로 밝혀질 때에는 증여를 취소하고 다시 종합과세하므로, 타익신탁으로 인한 이자소득은 자녀 계좌로 이체시키고 그 이후에도 자녀 명의로 관리해야 한다.

### (3) 소득의 귀속시기를 바꿈

세율이 기간별로 고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연차적으로 감소한다면 납세자는 소득의 인식을 유예함으로써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반면, 만일 세율이 연차적으로 상승한다면 소득의 인식을 加速하는 것이 유리하다.<sup>10)</sup> 이러한 유형의 전략이 세 번째 유형의 절세 계획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에 대한 과세를 일정한 거래가 발생하기 전 까지 유예해 주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어, 자산의 가치증가로 인한 소득은 해당 자산을 매각할 때까지 유예해 주며, 더욱이 매각 후 현금을 회수할 때까지 유예해 주기도 한다. 이렇게 과세를 유예해 주는 이유는 자산 보유자가 납세를 위해 자산매각을 강제 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또는 납세를 위해 자금을 차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sup>11)</sup>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자산보유자는 자산의 매각시점을 조정함으

9)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10년 간 누적적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박 종합氏의 경우 자녀가 성년이라면 3년이 경과한 후부터, 자녀가 미성년이라면 2년이 경과한 후부터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게 된다.

10) 단, 이 경우 이자율이 그리 높지 않아야 한다.

11) 그러나 우리 나라 토지초과이득세의 경우는 이러한 과세유예 관행의 逆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로써 자산가치의 증가로 인한 소득이 귀속되는 시기를 바꾸고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납세의 유예는 남용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자산의 청산시점을 유예하거나 加速함에 따르는 기회비용이 그리 크지 않은 경우가 더욱 그렇다. 한편, 납세자는 소득의 귀속시기를 바꾸기 위해 자산의 청산시점을 조정하는 데에 따르는 비용을 감수해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사회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낭비가 될 수 있다.

법인의 경우는 회계처리방법을 이용하여 소득의 귀속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다. 일례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에서 정률법으로 바꿈으로써 소득의 귀속시기를 유예할 수 있으며, 반대로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함으로써 소득의 귀속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미국 국세청은 절세 목적으로 회계처리방법 변경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납세자가 사용한 회계처리방법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또, 이와 연관하여 미국 국세청은 “constructive receipts doctrine”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 원칙에 따르면 납세자가 이미 획득하여 쉽게 수령할 수 있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유예를 할 목적으로 납세자가 해당 소득의 수령을 거부할 수 없다. 이러한 소득의 예로는 근로자가 회사의 급여계(payroll department)에서 손쉽게 수령할 수 있는 연말 급여 수표(pay check), 그리고 은행이 예금자 계정에 계상한 이자로서 그 계정에 언제라도 인출이 가능한 자금이 있는 경우 등이다.

납세자들은 선물거래를 이용하여 소득의 귀속시기를 바꿀 수도 있다. 선물거래를 통해 소득의 귀속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선물을 매수(long position)함과 동시에 동일한 종목의 인도시기만 다른 선물을 매도(short position)한다. 일례로, 내년 3월에 인도되는 금선물을 매수하고, 동시에 내년 4월에 인도되는 금선물을 매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을 commodity straddles라고 부르는데, 두 포지션의 가격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므로, 투자 위험은 매우 낮다. 그러면 이러한 전략이 어떻게 소득의 귀속시기를 변경하는 데에 이용되는지 살펴보자. 먼저, 선물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든지 상관없이 한 포지션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반대 포지션에서는 유사한 크기의 손실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만일 납세자가 소득을 유예하고자 한다면, 손실이 발생한 포지션을 당기에 실현시키고, 반대로 소득의 인식을 앞당기기를 원한다면 이익이 발생한 포지션을 당기에 실현시키면 된다. 이 때 포지션을 실현시킨 직후 그와 유사한 포지션을 다시 구축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납세자는 어느 한 쪽 포지션만 보유하게 되어 급격한 가격

변동에 따른 투자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미국 세법은 이러한 선물을 이용한 절세 전략의 남용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세법 규정을 채택하고 있다. 대표적인 규정으로, commodity straddles로부터 발생한 손실은 대칭 되는 이익이 실현될 때까지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또, 선물포지션은 기말에 시가로 평가하여 (marked to market value) 미실현 이익이나 손실에 대해 과세한다.

소득의 귀속시기를 바꾸는 또 다른 예로서 미국의 경우 "leveraged tax shelter investments with nonrecourse debt"이 있는데, 이는 차입자금으로 매입한 자산을 담보로 하는 투자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감가상각 자산을 시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면서 소액의 down-payment만 하고, 나머지 매입대금은 차입금으로 충당하였다고 하자. 이 납세자는 시가보다 훨씬 높은 매입가격으로 인해 거액의 감가상각을 손금산입 할 수 있고, 또 투자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납세자가 과세연도가 경과한 후 차입금에 대해 지급불능을 선언한다면, 이 납세자는 과거에 인식하였던 감가상각을 소득으로 recapture해야 한다. 경과기간에 따라서는 투자세액공제도 recapture해야 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납세자는 소득의 귀속시기를 해당 자산의 매입 시점이 속한 회계연도로부터 지급불능선언이 속한 회계연도로 유예한 셈이 된다. 이러한 전략은 세율이 기간별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현가로 따져서 유리하며, 더욱이 이러한 전략을 세율이 인하되는 시기에 맞춘다면 절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 III. 納稅者들의 過度한 節稅 計劃을 統制하기 爲한 稅法上의 制約

제 2절에서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가능한 전략적 절세 계획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몇 가지 절세 계획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에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러한 절세 계획의 남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미국의 세법 규정이 납세자의 거래행위에 제한을 가하는 것도 보았다. 본 절에서는 납세자의 과도한 절세 계획을 방지할 목적으로 마련된 세법상의 규제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Scholes and Wolfson(1992)은 세법상의 이러한 제약을 원칙적 수준에서 모든 거래에 대해 적용되는 일반적 제약(general restrictions)과 특정한 거래에만 적용되는 특정 제약(specific

restrictions)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前者는 그 적용의 범위가 後者보다 훨씬 더 넓다. 특정 제약은 해당 거래의 특수성에 근거하므로 그 성격이 매우 다양하여서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일반적 제약에 대해서만 다루고자 한다.

### (1) 사업목적원칙(business-purpose doctrine)

납세자의 거래행위에 가해지는 세법상의 일반적 制約은 과세당국이 납세자의 거래가 “작은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지를 따질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일례로, 국세청은 주어진 거래가 조세회피(세금의 최소화) 이외에 유효한 사업목적(business purpose)을 가지고 있는지를 따질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만일 어떤 거래가 조세회피 이외에 실질적인 사업목적이 없다면, 또는 해당 거래보다 더 단순한 형태의 거래를 통해서도 유사한 경제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조세당국은 해당 거래를 재해석하여 과세 상 혜택이 덜 주어지도록 취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목적원칙은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매우 높은데, 그 이유는 어떤 거래가 약간의 사업목적만을 가진 경우에는 그것으로써 충분할 것인지 판단하는 일은 주관적인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 세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tax courts)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 진다.

### (2) 실질과세원칙(substance-over-form doctrine)

실질과세원칙은 사업목적원칙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이 원칙은 조세당국이 주어진 거래의 법적 형식을 째뚫어 그 거래의 경제적인 실질을 파악한 후 그에 맞추어 과세할 수 있도록 허용한 원칙이다. Scholes and Wolfson(1992)은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된 케이스인 “Gregory(납세자) 對 Helvering(국세청장)”의 케이스를 소개하고 있다. 납세자인 Gregory는 자신이 경영하던 회사를 둘로 분할하여 두 개의 새로운 회사를 만든 다음 그 중 하나를 청산하였다. 1986년 이전의 미국세법에 의하면, 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이나 감가상각 자산이 없는 주식회사의 완전 청산은 법인세가 비과세 되며, 청산소득은 주주들에게 자본이득으로 과세되었다. 미국 국세청은 Gregory의 상기한 두 거래, 즉 회사의 분할 및 청산을 면밀히 조사한 후 해당 거래에서 사업목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아울러 국세청은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배당의 지급으로 해석하였다. 즉, Gregory의 거래행위는 배당소득을 자본이득으로 바꾸고자한 시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국세청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승소하게 되었다.

회사가 청산하지 않고도 회사의 자산을 주주들에게 이전하면서 자본이득세율을 적용 받게 하거나 비과세 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공개시장에서 회사가 주식을 되사들이는 것(stock repurchase)이다. 그러나 만일 주식을 되사들이면서 주주들로부터 각자의 지분률에 비례한 주식의 수 만큼씩을 되사들이면 국세청은 이를 배당으로 간주하는데, 이 또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는 예가 된다고 하겠다. 주식을 되사들임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자본이득세율로 과세되기 위해 주주들의 지분률에 비례하지 않도록 회사가 주식을 사들이는 일은 소유구조가 다변화되어 있는 공개기업보다는 소수의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서 더 어려운 문제가 된다. 그 이유는 몇몇 주주들이 소유한 기업의 경우 지분률에 비례하지 않는 주식의 되사들임은 회사의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세금비용(non-tax costs)으로 인해 소수의 주주들이 소유한 closely-held 기업의 경우 주식 되사들이기는 매력적인 절세 계획이 되지 못할 수가 있다.

한편, 실질과세원칙과 사업목적원칙은 미국세법규정(Internal Revenue Code)상 여려 군데에 조문화되어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아마도 국제이전가격과 연관된 분야일 것이다. 두 개의 다른 국가에서 영업을 하는母公司와 子회사간에는 자금, 재화, 용역의 이전을 포함하는 다양한 내부거래가 일어난다. 이 때 두 국가의 세율이 상이함으로 이러한 내부거래시 이전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따라 기업 전체의 稅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高세율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子회사로 이전되는 재화 및 용역의 가격을 높이거나, 또는 子회사에서 발생한 해외소득을 母회사로 송금할 때에 배당보다는 이자나 로열티 또는 임차료 등 손금산입이 가능한 항목으로 함으로써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전가격 관행이 분명한 사업목적 없이, 또는 경제적 실질과는 달리 주로 절세 목적으로만 이루어진다면, 과세당국은 그러한 이전가격 관행을 인정하지 않고 과세소득을 조정할 권리를 갖는다. 이외에도 미국 국세청은 납세자가 선택한 회계처리방법이 소득을 분명히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회계처리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또, 이월결손이 있는 회사를 흡수 합병하는 경우 합병회사가 이월결손을 미래의 소득에서 공제 받기 위해서는 그 합병이 절세 목적 이외의 유효한 사업목적을 가져야 한다.

### (3) 소득양도의 원칙(Assignment-of-Income Doctrine)

소득의 양도란 납세자가 자신에게 지급될 소득을 자신이 지정한 특정인에게 지급되도록 하면서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도 그 특정인이 납부하도록 만드는 것을 가리킨다. 이 경우 소득을 양도받는 특정인은 양도자 보다는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 납세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partnership에 출자한 파트너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partnership의 소득을 자신의 자녀에게 지급되도록 하거나, 또는 주식투자자가 배당을 자신의 자녀에게 지급되도록 하면서 해당 자녀가 양도된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때 partnership의 소득이나 배당이 열매에 해당한다면 partnership에 투자한 자본이나 주식에 투자한 자본은 나무에 해당한다. 소득양도의 원칙에 따르면 소득이低세을 납세자에게 성공적으로 양도되기 위해서는 나무 자체가 양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위의 예에서 partnership 지분이나 주식을 자녀에게 양도하지 않고서는 partnership의 소득이나 배당만을 자녀에게 양도하고 자녀가 그러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은 국세청이 인정하지 않는다. 이 원칙에 저촉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미국의 납세자들은 교묘한 방법들을 고안해 냈으므로써, 미국 국세청은 1986년 세법개정을 통해 부모와 자녀간의 소득양도에 대해 제한을 가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14세 이하의 자녀가 획득한 배당, 이자, 로열티 등을 포함하는 passive income의 대부분은 부모가 획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게 되었다.

Scholes and Wolfson(1992)에 따르면, 소득양도의 원칙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Non-community property state에 사는 어느 부부가 서로 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남편이 획득한 소득의 50%를 부인이 갖도록 하고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은 부인이 납부하도록 하였다.<sup>12)</sup> 소득세율 구조가 누진적이므로 남편 혼자 소득신고를 하는 것보다는 부부가 개별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총 납부세액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게 되었고, 법원도 국세청의 팔을 들어주었다. 즉, 법원이 상기한 계약을 용납하지 않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소득양도의 원칙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상으로 납세자의 과도한 절세 계획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세법상의 일반적인 제약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세법상 아무리 많은 제약이 가해진다 해도 조세체계를 남용할 수 있

---

12) Community property state에서는 배우자 중 하나가 획득하는 소득의 절반은 자동적으로 다른 배우자에게 귀속한다.

는 기회는 얼마든지 열려있다. 또 조세체계가 특정한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한 이러한 남용의 기회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세법상의 제약이 무리한 절세 계획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은 자명하다. 한편, 세법상의 여러 제약 이외에도 납세자들의 절세 계획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요소로서 비세금 측면에서의 비용을 들 수 있는데, 다음 제4절에서는 이러한 비세금 비용에 관하여 살펴볼 것이다.

#### IV. 戰略的 節稅 計劃으로부터 發生하는 非稅金 側面에서의 費用

모든 절세 계획은 경제적 거래(transactions)를 수반하는데, 이러한 경제적 거래는 수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비용(costs)을 발생시킨다. Scholes and Wolfson (1992)은 절세 계획을 수립할 때에 절세 효과 이외에도 그러한 계획이 수반할 수 있는 다양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Scholes and Wolfson은 이러한 거래비용을 통칭하여 비세금비용(nontax costs)이라고 부르는데, 효율적인 절세 계획은 이러한 비세금비용까지 고려한 계획이어야 한다. 흔히 相異한 절세 계획은 상이한 경제적 거래를 수반하므로 계획이 변함에 따라 거래비용의 크기도 변한다. 따라서, 세금절감을 위한 계획이 비록 세금비용은 감소시켜 줄지라도 거래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납세자가 부담하는 전체적인 비용이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가장 효율적인 절세 계획은 세금비용만을 최소화하거나, 또는 거래비용만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을 합한 전체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다.

Scholes and Wolfson(1992)은 절세 전략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비세금비용의 한 가지 예로서 재무보고비용(financial reporting costs)을 들고 있다. 미국의 경우 회사가 주주에게 보고하는 이익과 납세목적으로 세무당국에 보고하는 이익간에 큰 차이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재무보고목적과 세무보고목적으로 사용하는 회계절차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다.<sup>13)</sup> 그러나一部 거래에 대해서는 두 보고목적상의 회계절차가 동일하

13) 가장 극적인 예로 General Dynamics를 들 수 있을 것이다. 1970년 중반부터 1980년 중반에 이르기까지 이 방위산업 회사는 모든 계약에 대한 수익인식과 관련하여 세무보고 목적으로는 완성 기준을 적용하나 재무보고목적으로는 진행기준을 사용함으로써 과세이익과 회계이익간에 엄청난 격차를 보고하게 되었다. 더 상세한 내용은 Wheeler and Outslay(1986)를 참조하라.

며, 이로 인해 과세소득을 감소시켜 절세 효과를 가져오는 거래가 순이익을 감소시킬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장부가액 이하로 가치가 하락한 자산을 매각하면 세법상 과세소득을 줄여주는 손실을 인식하지만 동시에 재무보고 목적 상으로도 처분손실을 인식해야 하므로 주주에게 보고하는 순이익도 감소한다. 이렇게 순이익의 감소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비용을 총칭하여 재무보고비용이라고 부른다. 일례로, 순이익이 감소하면 주주지분이 감소하므로 재무구조가 악화된다. 이는 회사의 추후 차입이자율(자본조달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 기존의 차입금에 대한 부채계약(debt covenant)의 위반을 초래함으로써 채권자와의 재계약을 필요로 하게 만들거나, 최악의 경우 부채를 초기에 상환해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갈 수도 있다. 또, 순이익의 감소는 배당능력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회사의 주식에 대한 투자자의 평가에 나쁜 영향을 주고, 이는 추후 유상증자時 新株발행가격을 낮춤으로써 자본조달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사실, 재무보고와 절세 목적이 상충하는 대표적인 예는 재고회계처리 방법 중 하나인 LIFO를 선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周知하다시피, LIFO는 절세 효과를 가져오지만 주주에게 보고하는 순이익을 감소시킨다. 많은 기업들이 물가상승시기에도 FIFO의 사용을 고수함으로써 상당한 절세 효과를 포기하는 예가 많은데, 이러한 기업들의 대부분은 LIFO의 사용이 가져올 순이익의 감소를 꺼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4)</sup>

이러한 재무보고비용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비세금비용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절세 목적으로 매출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기업활동을 위한 지출을 앞당긴다면 기업활동의 적시성을 해칠 수 있다. 매출의 고의적 지연은 재고를 증가시킴으로써 재고보유비용(inventory holding costs)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고객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도 있으며, 연구개발비나 광고비의 지출을 가속화함으로써 이러한 활동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외에도 소득 귀속시기를 바꾸는 것은 경영자의 성과평가에도 예상하지 못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보상체계를 왜곡시킬 수도 있으며, 지나치게 공격적인 과세소득 이연은 국세청의 세무감사를 촉발할 수도 있다.

14) Klassen(1997)은 기업의 주요한 의사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비용과 재무보고비용 사이의 상충가능성을 직접적으로 검증하였다. 재무보고비용은 회사가 자본시장에 존재하는 투자자와 같은 외부정보사용자들에게 기업가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발생하므로, Klassen은 이러한 필요성을 "자본시장압력(capital market pressure)"으로 통칭하고 있다.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 간의 상충에 관해 논의하고 있는 또 다른 연구로는 Collins and Shackelford(1992), Smith(1997), Klassen et al.(1993), Scholes et al.(1992) 등이 있다.

또, 기업들의 과도한 절세 계획은 정치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절세 계획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기업들은 그 대신 암묵세(implicit tax)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지만, 일반 시민들이나 정치인들은 암묵세에 대한 인식이 낮으므로, 정치인들이나 시민단체들이 세금을 적게 내는 기업에 대해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가 최저한세(minimum alternative tax) 제도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절세 계획은 복잡한 거래의 수행을 필요로 하며, 복잡한 거래는 수많은 정보의 처리 및 유지를 필요로 하게 만든다. 이러한 정보비용은 그 크기가 엄청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단순한 세금계획은 복잡한 세금계획에 비하여 정보처리비용이 훨씬 더 낮으므로, 단순한 절세 계획이 비세금비용을 포함한 전체적인 비용 측면에서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 V. 要 約

본 연구는 Scholes and Wolfson(1992)의 연구에 근거하여 납세자들이 취할 수 있는 절세 계획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각 유형 별로 상세한 사례를 우리 나라와 미국의 조세환경에서 발견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절세 전략이 남용의 소지가 있으며, 이러한 남용에 대해 국세청이 대처할 수 있는 세법상의 규정들을 원칙적인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또 납세자들이 절세 계획을 수행함에 있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비세금비용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비세금비용이 세법상의 제약처럼 납세자들의 과도한 절세 계획에 제동을 거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았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납세자들은 절세에 관심을 가지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체계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절세 계획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납세자들에게 적법한 절세 계획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과세당국에는 세법의 남용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과생상품 거래와 같은 새로운 경제활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과세방법이 확정되지 않음으로써 납세자들이 과생상품 거래를 절세 전략으로서 남용할 가능성은 잠재적으로 매우 크다. 따라서, 우리나라 과세당국은 과생상품 거래에 대한 과세 방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과생상품의 경제적 효과와 절세 전략의 남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고종권 (1996), “내재적 조세에 관한 실증연구,” 「세무학연구」 제8호, pp. 277-300.
- 김갑순 (1999), “기업의 기간간 내재적 조세,” 「회계학연구」 제24권, 제3호, pp. 1-23.
- 정운오 (1996), “자산수익률에 미치는 세금효과,” 「세무학연구」 제8호, pp. 101-124.
- \_\_\_\_\_ (1998), “미시경제학에 근거한 세무연구,” 「회계학연구」 제23권 제3호, pp. 107-135
- \_\_\_\_\_ (1999), “Scholes and Wolfson의 세무연구 패러다임에 나타난 주요 개념 및 분석틀,” 「경영논집」 제33권, 제1호, pp. 114-145.
- Collins, J., & Shackelford, D. (1992), “Foreign Tax Credit Limitations and Preferred Stock Issuan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 30, Supplement, pp. 103-130
- Klassen, K. (1997), “The Impact of Inside Ownership Concentration on the Trade-Off Between Financial and Tax Reporting,” *Accounting Review*, Vol. 72, No.3, pp. 455-474.
- \_\_\_\_\_, Lang, M. & Wolfson, M. (1993), “Geographic Income Shifting by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Response to Tax Rate Change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 31, Supplement, pp. 141-173.
- Scholes, M., & Wolfson, M. (1992), “Taxes and Business Strategy: A Planning Approach,” Prentice Hall.
- \_\_\_\_\_. Wilson, G., & Wolfson, M. (1992), “Firms’ Responses to Anticipated Reductions in Tax Rates: The Tax Reform Act of 1986,”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 30, Supplement, pp. 161-192.
- Smith, J. (1997), “The Effect of Tax Reform Act of 1986 on the Capital Structure of Foreign Subsidiaries,” *The Journal of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Vol. 19, No.2, pp. 1-18.
- Wheeler, J., & Outslay, E. (1986), “The Phantom Federal Income Taxes of General Dynamics Corporation,” *Accounting Review*, Vol. 61, Iss. 4, pp. 760-774.